

 기획재정부		<h2>보도자료</h2>	
보도일시	<b>배 포 시</b>	배포일시	2020. 11. 30.(월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(044-215-4110)	담당자	김만수 서기관 (044-215-4111)

###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

-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.30(월)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총 16개\*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  - \*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종합부동산세법, 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주세법, 주류면허법, 증권거래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,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관세법, 관세사법
- 정부가 '20.8.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< 국세기본법 >

-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
  - \* (현행) 미납세액의 300% 가산세 부과  
(개정) 3개월 내 납부 100%, 3~6개월 내 납부 200%, 기타 300% 가산세 부과

#### < 소득세법 >

-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('21.10.1. → '22.1.1.)
-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\* 적용
  - \*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, ③월세세액공제
-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% 인하\*
  - \* (현행) 미제출 0.5%, 지연제출 0.25% → (개정) 미제출 0.25%, 지연제출 0.125%